

제 21 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집회결과

건	명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1. 25 - 12. 24					
의 결 일 시	1992. 12.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원안대로 의결						
심 부 :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1992 년 12 월 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이 상 유 무				
의 결 시 잔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중 “건축법 제18조 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 4 조 (변소) 중 “건축법 제20조 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으로 한다.

제 5 조 (지하층의 설치) 중 “건축법 제22조의 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 6 조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1조 제1호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열관류율의 값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이하
2. 단열재의 두께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2분의 1이상

제 7 조 (건축재료의 품질) 중 “건축법 제25조”를 “건축법 제42조”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25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32조”로 한다.

제 8 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중 “건축법 제31조 제1항”을 “건축법

제33조 제1항”으로 한다.

제 9 조 (건축선의 지정) 중 “건축법 제30조 제1항”을 “건축법 제36조 제1항”으로 한다.

제 10 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중 “건축법 제31조 제2항”을 “건축법 제37조 제2항”으로 한다.

제 11 조 (건폐율) 중 “건축법 제39조”를 “건축법 제47조”로 한다.

제 12 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중 “건축법 제39조의 2 제2항”을 “건축법 제49조 제2항”으로 한다.

제 14 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중 “건축법 제41조”를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을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으로 한다.

제 15 조 (대지안의 공지) 중 “건축법 제41조의 2”를 건축법 제50조”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호”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2호”로 한다.

제 17 조 (주택의 건설기준) 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4조 제22조 내지 제24조의 2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8조”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1 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집회결과

건	병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집 회 기 간	1992. 11. 25 ~ 12. 24						
의 결 일 시	1992. 12. 5	재 적 의 원	22 명	출 석 의 원	20 명		
의 결 사 항 ○ 의결결과 : 수정 의결 첨 부 :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 1부. 끝							
1992 년 12 월 7 일 구 미 시 의 회 의 장 문 창 식							
의 결 방 법		이 상 유 무					
의 결 시 찬 반 표 시	찬 성	20 명	반 대		명	기 권	

구미시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2. 기타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⑩ 영 제5조 제3항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적용의 특례) ①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
 - 가.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
 - 다.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
 - 가.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5,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7 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9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8 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9 이하
 - 나.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 이하
 - 다. 대지면적 기준 :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

1 이상(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 이상

②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5,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7 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9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10분의8 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9 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1 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1 이상, 기타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1 이상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제 5 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①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층수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제18조 제4호 제6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준주거지역 안에서 제19조 제3호 제5호 내지 제1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8층이상이거나 연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제24조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5조 제2호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준공업지역내 건축물로서 영 별표 11호 제1호 사목의 건축물과 제26조 제2호 내지 제2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7.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②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 6 조 (건축종합민원실)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 제7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조 (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시설녹지 지역안은 제외)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
3.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공장 부속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구조물
2.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 시기·방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 3 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공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
 5. 공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건폐율의 10퍼센트 이하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 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외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계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당시를 기준으로하여 높이 2미터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해 심는 낙엽수는 10퍼센트이상을 유실수 또는 무궁화 수종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심 는 밀 도 (제곱미터 당)	상록수의 비율 (퍼 센 트)
교 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 : 본 이상	상록수 : 50 낙엽수 :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4 : 본 이상	

제13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 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미술장식품의 설치)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공동주택,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제1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와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표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6미터이상 8미터미만인 때 8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1 이상 대지둘레의 6분의1 이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8미터이상 10미터미만인 때 10미터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5분의1 이상 대지둘레의 6분의1 이상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방법초소
2. 소규모 매점·신문판매대
3. 육교위의 건축물
4. 구두수선소
5. 공공화장실
6. 버스표 판매소

제 4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17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노유자시설
2. 종교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인 것

에 한한다)

3. 국민학교
4.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5. 전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6.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미만으로서 폭 8미터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 집회장에 한한다)
8. 전시시설
9. 공장(인쇄·봉제·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 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것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13. 방송·통신시설

14. 군사시설

15. 청소년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제19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2. 교육연구시설

3. 운동시설

4. 업무시설

5. 판매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전시시설

8.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9. 창고시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운전학원·정비학원에 한한다)

12. 식물관련시설

13. 교정시설

14. 군사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청소년시설

제20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경우에 한한다)
3. 기숙사
4. 노유자시설(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한한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
7. 운동시설
8. 공장(인쇄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2. 청소년시설

제21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주택
3. 노유자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4. 교육연구시설
5. 운동시설
6.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는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한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운수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
10. 동물관련시설(가축시장 및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 도계장에 한한다)
11.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12. 군사시설
13. 교정시설
14. 관광휴게시설
15. 청소년시설

제22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노유자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3. 교육연구시설
4. 운동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
10. 전시시설
11. 공장 (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3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
에 한한다)
12. 창고시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운수시설
15. 자동차관련시설
16. 동물관련시설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한 1급 도계장에 한한다)
17. 발전소
18. 방송·통신시설
19. 교정시설
20. 군사시설
21. 청소년시설

제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종교시설

3. 노유자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4. 위락시설

5. 업무시설

6. 전시시설

7. 관람집회시설

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

10. 발전소

11. 군사시설

12. 청소년시설

13. 방송·통신시설

제24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운수시설

2. 노유자시설

3. 교육연구시설(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4. 군사시설

5. 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6. 의료시설

7. 전시시설(산업전시장·박람회장에 한한다)

8. 방송·통신시설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9

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기숙사
2. 종교시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4. 전시시설
5. 운수시설
6. 노유자시설
7. 방송·통신시설
8. 군사시설
9. 교정시설
10. 청소년시설
11. 동물관련시설
12. 의료시설

제26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0

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종교시설
4. 노유자시설
5.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기술계학원·직업훈련
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6. 운동시설
7. 업무시설
8. 관람집회시설
9. 판매시설(농·축·수산물판매시설에 한한다)
10. 전시시설
11.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를 넘는것에 한한다)
12. 운수시설
13. 방송·통신시설
14. 군사시설
15. 교정시설
16. 청소년시설
17. 동물관련시설
18. 의료시설
19. 묘지관련시설
20. 장례식장

제27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의 것에 한한다)
3. 노유자시설
4.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전시시설
7.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9. 묘지관련시설
10. 장례식장
11. 청소년시설
12. 의료시설

제2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종교시설
5. 전시시설(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의 박물관·미술관에 한한다)
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7.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에 한한다)
8.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10.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1. 묘지관련시설
12. 장례식장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판매취급소에 한한다)
14.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기숙사
4. 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5. 종교시설
6.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
7. 관람집회시설
8. 전시시설
9.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1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
14. 발전소

제 5 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 1 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 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 중 (3) 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운동시설
3. 격리병원
4. 직업훈련소·사설강습소
5. 일반업무시설
6. 일반숙박시설
7. 판매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10. 창고시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운수시설
13. 자동차관련시설
14. 동물관련시설
15. 분뇨·쓰레기관련시설
16. 교정시설
17. 묘지관련시설
18. 아파트
19. 관람집회시설

제31조(건폐율)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폐율은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40이하로 한다.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35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벽의 각부분으로부터 1미터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담장 및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부속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6조(건축물의 용도) ①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제3종 및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2. 공장
3. 창고시설
4. 교정시설
5. 묘지관련시설
6. 저탄장·야적장
7. 격리병원
8. 자동차관련시설(영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9. 동물관련시설
10. 분뇨·쓰레기처리시설

③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8호중 폐차장, 정비공장, 제9호, 제10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④ 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제8호중 폐차장, 정비공장에 한한다)의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⑤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등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않은 범위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7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15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6.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38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폭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4층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건축면적) 제1종 내지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제곱미터)

구	분	건	축	면	적
3	층 이 하			6	0
4	층 ~ 10층			1	0 0
11	층 ~ 15층			2	0 0
16	층 이 상			6	0 0

제41조 (부속건물의 범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 (건축물의 모양)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담장, 대문에 대한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 (건축물의 부수시설) ①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 3 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44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1 제4호(근린생활시설) 나목 중 (3), (7), (8)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격리병원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관람집회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
12. 동물관련시설
1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제45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①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
2. 근린생활시설
3. 종교시설
4. 노유자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운동시설
8. 숙박시설
9. 판매시설

10. 위락시설
11. 관람집회시설
12. 동·식물관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운수시설
17. 자동차관련시설
18. 동물관련시설
19. 분뇨·쓰레기처리시설
20. 식물관련시설
21. 발전소
22. 교정시설
23. 묘지관련시설
24. 장례식장
25. 관광휴게시설
26. 자연권청소년시설, 유스호스텔

제 4 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46조(건축물의 용도) 공항지구안에서는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발전소
2. 제련소
3. 요업공장

4. 화학공장

제 5 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7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48조(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묘지관련시설
2. 분뇨·쓰레기처리시설
3. 군사시설(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4. 동물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6. 식물관련시설
7.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8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6.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7. 전시시설중 동·식물원
8.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③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1.8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공공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제49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재해로부터 안전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 6 장 건폐율 · 용적율등

제50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6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60
 10. 준 공 업 지 역 : 100분의 60
 11. 보존녹지지역 : 100분의 2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100분의 60
- ② 영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 지구안에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90 이하
 -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 정한 것
 -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 이하
 -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 이하

제51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1. 보존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400퍼센트

제52조 (용적율의 완화) ① 영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를 각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용적율}$
2. 아파트지구 :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7) \times \text{기준용적율}$
3. 도시설계지구 :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0.8) \times \text{기준용적율}$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text{제공면적} \div \text{대지면적}) \times \text{기준용적율}$

제5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5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6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7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다만,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3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다만,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25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11. 보존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 15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지역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 60제곱미터 제54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띄 어 야 할 거 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미만	1천제곱미터이상	
공 해 공 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준 공 업 지 역	1.5	2	모든 건축선
	기 타 지 역	3	5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띄 어 야 할 거 리		적용대상 건축선
		2천제곱미터미만	2천제곱미터이상	
창 고 시 설 운 수 시 설	준 공 업 지 역	1.5	2	2이상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출입구 가 있는 건축선
	기 타 지 역	3	4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띄 어 야 할 거 리		적용대상 건축선
		2천제곱미터미만	2천제곱미터이상	
판 매 시 설 숙 박 시 설 관 랑 집 회 시 설 전 시 시 설 종 교 시 설	모 든 지 역	2	4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아 파 트	모 든 지 역	4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제55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 1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건축,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합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정북 방향의 수평거리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처마 끝으로 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 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공 해 공 장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준공업지역	—	1	0.5
	기 타 지 역	—	2	1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이므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
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
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정북 방향의 수평거리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처마 끝으로 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 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판 매 시 설 숙 박 시 설 관람집회시설 전 시 시 설 종 교 시 설	모 든 지 역	—	1	0.5

3.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정북 방향의 수평거리	외벽의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처마 끝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0.5이상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0.5이상	0.2이상
준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0.2이상
공동주택	3층 또는 4세대의 다세대주택	개구부가 있는 곳	—	1.0이상	0.5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	0.5이상	—
	연립주택		—	2.0이상(2층이하인 경우 1.0이상)	1.0이상(2층이하인 경우 0.5이상)
	아파트		—	4이상	3이상

제 7 장 건축물의 높이

제56조 (20이상의 도로가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 제2

항 및 영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5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부분중 5미터이상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 ② 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

제57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다.

- ② 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0배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5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초과 8미터미만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1 이상
3.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4. 3층이상인 건축물과 2층이하로서 높이 8미터초과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 ② 영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 이하

2.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 ③ 영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도시설계등

제59조(도시설계 작성방법) ① 영 제5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2와 같다.

②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3 및 별표4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0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판매시설 : 5퍼센트이상
2. 업무시설 : 5퍼센트이상
3. 관광숙박시설 : 10퍼센트이상
4. 종교시설 : 8퍼센트이상
5. 관람집회시설 : 10퍼센트이상
6.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이상

②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1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것. 다만, 피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③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내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대지의 공지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 9 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61조(온돌의 시공등)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사단법인 온돌시공협회가 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보수 기간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온돌시공을 할 수 없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의 위해를 끼친 자
 2. 온돌시공상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 기술교육에 이수후 2년이내에 동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제 10 장 보 칙

제62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흥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시행

령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2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 3 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건폐율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영 별표2 내지 별표7 및 영 별표9 내지 별표14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전에는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개정규정 또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용도의 건축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 및 건축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1】

건축허가수수료 (제7조 관련)

건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원)	
	건 축 허 가	용 도 변 경 허 가
	단독주택 3,000	단독주택 1,000
	기 타 7,000	기 타 3,000
200㎡ 미만	단독주택 4,500	단독주택 2,000
	기 타 15,000	기 타 8,000
2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5,000㎡미만	40,000	15,000
5,000㎡이상 10,000㎡미만	75,000	40,000
10,000㎡이상 30,000㎡미만	150,000	75,000
30,000㎡이상 100,000㎡미만	300,000	
10,000㎡이상 300,000㎡미만	600,000	
300,000㎡이상	1,200,000	

【별 표 2】

도시설계승인시 검토사항 (제59조 관련)

1. 도시설계의 기본사항 및 원칙

- 가. 종합적인 목표와 개발방향
- 나. 지역특성에 따른 도시설계의 성격 및 기능부여
- 다. 전체도시 및 인근 지역환경과의 관계와 조화
- 라. 도시설계의 원칙·지표와 공간구성의 표준
- 마. 토지이용계획
- 바. 도시의 성장·변경화에 대한 적응성
- 사. 다른계획과의 관계

2. 교통처리계획

- 가. 도심 및 주위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 나. 구역내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설물의 설치 계획
- 다. 보행자공간과 보행동선계획
- 라.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3. 건축계획

- 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색채의 적정성
- 나.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 다. 건축규제계획
- 라. 도로 및 광장 설치계획과 조망계획

4. 조경 및 경관계획

- 가. 공공공지 공개공간의 계획
- 나. 공원·녹지의 연계계획
- 다. 자연환경·경관의 보존계획
- 라. 조경시설물 설치계획과 가로변 식재계획

5.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 시설계획

- 가. 공공시설의 규모·배치와 서비스기능
- 나. 공급처리구조와 공동구의 계획
- 다. 하수처리 및 공해방지계획

6. 공공투자계획 및 집행계획

- 가.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자원소요판단과 자원조달계획
- 나. 집행주체별·연차별 투자계획

7. 기 타

가. 특별사업구역의 자정의 적적성 및 개발계획

나. 제한·권장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

다.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별 표 3】

도시설계의 용어정의 (제59조 관련)

1. “설계구역”이라 함은 도시설계를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범위를 말한다.
2.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3. “건축물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1 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5.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6.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를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7. “1층 전면권장용도”라 함은 보행공간등이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를 건축해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8. “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대형대지에 대하여 도시설계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분할가능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9.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내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

를 말한다.

10. “공공주차통로”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통로를 말한다.
11.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내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2. “공공공지”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13. “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물의 3층이하의 부분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개방되는 건축물안의 공간을 말한다.
14. “벽면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15. “공공조경”이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위치에 식수방법등에 따라 조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로서 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17.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로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된 도로를 말한다.
18.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도로법등 관계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한다.
19. “최고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말한다.
20. “최저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21. “공공주차장”이라 함은 도시설계사업주체에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2. “완충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도로의 기능 또는 거주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녹지를 말한다.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년월일 : 1992. 12. 5

발 의 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 이유

지방건축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킴과 동시에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 수정 주요 골자

- 조례안 제3조 3항중 " 의회와 협의하여 " 를 삽입
- 조례안 제14조 중 " 100분의 1 " 을 " 100분의 0.5 " 로 수정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 3항중 풍부한 사람중 뒤에 " 의회와 협의하여 " 를 삽입한다.
- 제14조 중 " 100분의 1 " 을 " 100분의 0.5 " 로 수정한다.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경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 ⑩ 생략 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공동주택, 창고시설, 묘지 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경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 ⑩ 개정안과 같음. 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공동주택,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군사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 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